



2012년도 사회복지통합기금 성과분석 보고서



하 동 군

지표별 세부 산정기준

1. 타 회계(일반·기타특별) 의존율

지표유형 (계량/비계량)	계량지표	대상기금	기금 전체
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--	-------

개요(정의)	- 일반·기타특별회계 세출 대비 기금전출금의 비율
정책목적	- 기금 본래의 목적에 맞는 수입의 조성 유도
해석 및 특징	-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의 타 회계 의존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
산정공식	$100 - \left(\frac{\text{기금전출금}}{\text{일반·기타특별회계 세출총액}} \times 100(\%) \right)$ <p>※ 기금전출금 : 일반·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서 상의 기금전출금(702) ※ 기금전출금 규모는 감채기금·지방채상환기금(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일반·기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조성된 기금)을 제외 ※ 일반·기타특별회계 세출총액 : 일반·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서 상의 세출총액</p>
목표·기준치 (바람직한 상태)	- 일반·기타특별회계 의존율이 낮을수록 바람직

제출서식	(단위 : 천원)				
	기금전출금 총액(a)	공제대상(b)	기금전출금 (A=a-b)	일반·기타 특별회계 세출총액(B)	지표값(%) 100-((A/B)×100)
	1,518,490	-	1,518,490	349,614,947	99.57
※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					
검증자료	※ 현장검증시 확인사항(✓) ▶ 일반·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서, 개별기금 세입결산서		연락처	880-2024	
			작성자 (작성부서)	이용호	

2. 통합관리기금 조성·활용율

지표유형 (계량/비계량)	계량지표	대상기금	기금 전체	
개요(정의)	- 기금통합 촉진 및 통합자금의 효율적 관리			
정책목적	- 유사·중복기금의 통합을 촉진하고 여유자금의 통합관리에 의한 효율성 제고			
해석 및 특징	- 통합기금의 예탁율이 높고 활용도가 높을수록 여유자금 합리적 관리			
산정공식	- 통합관리기금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, 기본점수 60점을 부여하고, 설치여부 20점, 통합기금조성률 10점, 통합기금활용률 10점의 추가점수를 부여 ① 통합관리기금 설치여부 (20점) ② 통합관리기금 조성률 (10점) $\frac{\text{통합관리기금 조성액}}{\text{기금 총 조성액}} \times 100(\%)$ ※ 통합관리기금 조성액 : 기금결산보고서 통합관리기금 당해연도말 조성액 ※ 기금 총 조성액 : 기금결산보고서의 “1.조성총괄” 당해연도말 조성액 - 통합관리기금 당해연도말 조성액 ③ 통합관리기금 활용률 (10점) $\frac{\text{통합기금 활용액}}{\text{통합기금 조성액}} \times 100(\%)$ ※ 통합기금 활용액 : 기금결산시 지출총액 중 예치금을 뺀 금액			
참고사항/ 상세설명	- 통합기금은 별도의 부서(예: 예산부서)가 관리하는 별도의 통장이 있어야 하며, 통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예치금도 별도의 부서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통합기금으로 인정			
목표·기준치 (바람직한 상태)	-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조성률·활용률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상태			
제출서식	- 통합관리기금 설치 여부 (2) ① 설치하고 있다 ② 설치하지 않았다			
	- 통합관리기금 조성률 (단위 : 천원)			
	통합기금 조성액(A)	기금 총 조성액(B)	지표값(%) (A/B)×100	
	- 통합관리기금 활용률 (단위 : 천원)			
	통합기금 활용액(A)	통합기금 조성액(B)	지표값(%) (A/B)×100	
- 지표값				
기본점수	통합관리기금 설치여부	통합관리기금 조성률	통합관리기금 활용률	지표값
60				
※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				
검증자료	※ 현장검증시 확인사항(✓) ▶ 기금결산보고서, 개별 기금 및 통합기금 예치증서 사본		연락처	880-2024
			작성자 (작성부서)	이용호

3. 일몰제 적용률

지표유형 (계량/비계량)	계량지표	대상기금	기금 전체
개요(정의)	- 2006년 이후 신설 혹은 관련 법령·조례가 제·개정된 기금 중 일몰제를 규정한 기금의 비율		
정책목적	- 기금에 일몰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 도모		
해석 및 특징	- 일몰제 적용율이 높을수록 효율적 운영		
산정공식	- 대상기금수 : '06년 이후 신설 및 관련법령·조례가 제·개정된 기금 (개별법령에 설치 의무화된 기금 제외) ※ 관련법령·조례 제·개정은 단순 직제개편이나 타 조례 개정 등에 의해 자동 개정되는 경우를 제외 ※ 개별법령에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은 관련 법령(조례는 제외)상에 “○○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”라고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- 일몰제 적용 기금수 / 대상기금 수 × 100 - 분모인 대상기금수가 0인 경우 산정 제외		
목표·기준치 (바람직한 상태)	- 100%가 바람직한 상태		
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전체기금수</th> <th>제외기금수</th> <th>대상기금수 (A)</th> <th>일몰제가 규정되어 있는 기금수(B)</th> <th>지표값 C=(B/A)×100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5</td> <td>3</td> <td>2</td> <td>1</td> <td>5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전체기금수	제외기금수	대상기금수 (A)	일몰제가 규정되어 있는 기금수(B)	지표값 C=(B/A)×100	5	3	2	1	50																							
	전체기금수	제외기금수	대상기금수 (A)	일몰제가 규정되어 있는 기금수(B)	지표값 C=(B/A)×1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	3	2	1	5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출서식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기금명</th> <th>대상여부</th> <th>관련법령 및 조문</th> <th>일몰제규정여부</th> <th>조례제개정일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재난관리기금</td> <td>×</td> <td>* 법적기금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식품위생기금</td> <td>×</td> <td>* 법적기금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사회복지통합 기금</td> <td>○</td> <td>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부칙2조</td> <td>○</td> <td>11.5.20개정</td> </tr> <tr> <td>농가경영 회생기금</td> <td>○</td> <td></td> <td>×</td> <td>조례계정중</td> </tr> <tr> <td>옥외광고정비 기금</td> <td>×</td> <td>* 법적기금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기금명	대상여부	관련법령 및 조문	일몰제규정여부	조례제개정일	재난관리기금	×	* 법적기금			식품위생기금	×	* 법적기금			사회복지통합 기금	○	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부칙2조	○	11.5.20개정	농가경영 회생기금	○		×	조례계정중	옥외광고정비 기금	×	* 법적기금					
	기금명	대상여부	관련법령 및 조문	일몰제규정여부	조례제개정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재난관리기금	×	* 법적기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식품위생기금	×	* 법적기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사회복지통합 기금	○	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부칙2조	○	11.5.20개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농가경영 회생기금	○		×	조례계정중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옥외광고정비 기금	×	* 법적기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※ 아래의 양식은 모든 기금을 대상으로 작성 ※ 단순 직제개편이나 타 조례 개정 등에 의해 자동 개정되는 경우는 조례 개정일에 반영하지 않음 ※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검증자료	※ 현장검증시 확인사항(✓) ▶ 2006년 이후 신설 및 조례개정된 기금 현황 ▶ 관련 조례의 일몰제 규정 여부 ▶ 관련법령상 의무적 기금 규정 여부를 규정한 조항		연락처	880-202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작성자 (작성부서)	이용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4. 주민공개 친화성

지표유형 (계량/비계량)	계량지표	대상기금	기금 전체
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--	-------

개요(정의)	- 기금운용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에 대한 주민공개
정책목적	- 주민 친화적 공개를 통한 기금관리의 투명성 확보
해석 및 특징	- 재정공시 수준 이상으로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공개하고 있는지 분석
산정공식	- 4항목으로 평가 ※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
목표·기준치 (바람직한 상태)	- 4항목에 대해 모두 해당

제출서식	다음 4가지 항목 중 해당 항목이 0개면 80점, 1개면 85점, 2개면 90점, 3개면 95점, 4개면 100점으로 평가함		
	구 분		확인
	① 재정공시에 기금 결산자료를 공개하고 있음		○
	② 재정공시에 결산자료외에 구체적 내용(기금의 사업집행 내역 등)을 추가로 공개하고 있음		○
	③ 재정공시 이외에 다른 수단(시정소식지, 보도자료 등)에도 기금 결산자료를 공개하고 있음		×
	④ 재정공시 이외에 다른 수단(시정소식지, 보도자료 등)에도 결산자료외에 구체적 내용(기금의 사업집행 내역 등)을 추가로 공개하고 있음		×
	점 수		
※ 각 문항별로 증빙자료를 붙임으로 제출			
증증자료	※ 현장검증시 확인사항(✓) ▶ 홈페이지 재정공시 확인 ▶ 재정공시의 다른 수단을 통한 공개내역	연락처	880-2024
		작성자 (작성부서)	이용호

5. 기금별 타 회계(일반·기타특별) 의존율

지표유형 (계량/비계량)	계량지표	대상기금	개별 기금
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--	-------

개요(정의)	- 일반·기타특별회계에서 개별기금으로 전입한 비율
정책목적	- 기금 본래의 목적에 맞는 수입의 조성 유도
해석 및 특징	-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의 일반·기타특별회계 의존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
산정공식	$100 - \left(\frac{\text{일반·기타특별회계 전입금}}{\text{개별 기금 운용규모}} \times 100(\%) \right)$ <p>※ 일반·기타특별회계 전입금 : 개별 기금 세입결산액 중 일반·특별회계에서 전입한 금액(기타회계전입금 224-03)</p> <p>- 일반·기타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된 금액을 기금전입금(224-04)으로 결산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포함하여 산정</p> <p>※ 개별기금 운용규모 : 개별 기금 세입결산 총액 (실제수납액)</p> <p>※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</p>
목표·기준치 (바람직한 상태)	- 일반·특별회계 의존율이 낮을수록 바람직

제출서식	(단위 : 천원)			
	구분	개별 기금 운용규모(A)	일반·특별회계 전입금(B)	지표값(%) $100 - ((A/B) \times 100)$
	사회복지 통합기금	8,388,937	300,000	96.42
	<p>※ 금년도 분석대상인 모든 기금에 대하여 작성</p> <p>※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</p>			
검증자료	<p>※ 현장검증시 확인사항(✓)</p> <p>▶ 기금결산보고서</p>	연락처	880-2024	
		작성자 (작성부서)	이용호	

6. 기금조성을

지표유형 (계량/비계량)	계량지표	대상기금	개별 기금
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--	-------

개요(정의)	- 기금조성목표액에 대한 해당연도 조성액의 비율
정책목적	- 기금조성의 계획성, 충분성 등을 유도
해석 및 특징	- 실제 기금조성액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의 건전성 높은 것으로 분석됨
산정공식	$\frac{\text{해당연도 조성액}}{\text{조성목표액}} \times 100(\%)$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해당연도 조성액 : 기금결산서(조성 총괄)의 해당연도 조성액 (전년도까지 조성액을 제외한 금액) ※ 조성목표액 :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수입액 - 분모인 개별기금 조성목표액이 0인 기금에 대해서는 산정 제외 ※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개별기금의 조성목표액에 따라 산술평균하는 방식으로 산정
목표·기준치 (바람직한 상태)	- 100%가 바람직한 상태, 100%를 초과하는 경우 100%로 간주

제출서식	(단위 : 천원)			
	구분	해당연도 적립액(A)	조성목표액(B)	지표값(%) (A/B)×100
	사회복지 통합기금	477,024	483,187	98.72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금년도 분석대상인 모든 기금에 대하여 작성, 단 조성목표액이 0인 경우에는 지표값을 공란으로 처리하고, 평균시에도 모수에서 제외 ※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			
검증자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현장검증시 확인사항(✓) ▶ 기금결산보고서, 기금운용계획서 	연락처	880-2024	
		작성자 (작성부서)	이용호	

7. 계획적 운영비율

지표유형 (계량/비계량)	계량지표	대상기금	개별 기금
개요(정의)	- 연초 계획사업비 대비 집행실적		
정책목적	- 계획적인 기금운영을 유도		
해석 및 특징	- 연초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높을수록 기금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함		
산정공식	$\frac{\text{기금 지출액}}{\text{당초 계획 사업비}} \times 100(\%)$ <p>※ 기금집행액 : 기금결산서 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(재무활동 제외) -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(공기업경상전출금 309, 공기업자본전출금 404, 기타회계전출금 701, 기금전출금 702, 예탁금 704, 예수금원리금상환 705)과 보전지출 (차입금이자상환 311, 차입금원금상환 601, 예치금 602, 반환금기타 802) 등 10개 과목을 의미 ※ 당초계획사업비 :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(재무활동 제외) ※ 조성목표액 미도달로 적립만하고 있는 기금 및 지방채상환기금은 평가 제외 ※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</p>		
목표·기준치 (바람직한 상태)	- 100%가 바람직한 상태, 100%를 초과하는 경우 100%로 간주		

제출서식	(단위 : 천원)			
	구분	기금집행액(A)	당초계획 사업비(B)	지표값(%) (A/B)×100
	사회복지 통합기금	92,200	96,000	96.04
	※ 금년도 분석대상인 모든 기금에 대하여 작성, 단 고유목적사업비가 없는 경우에는 지표값을 공란으로 처리하고, 평균시에도 모수에서 제외 ※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			
검증자료	※ 현장검증시 확인사항(✓) ▶ 기금결산보고서, 기금운용계획서		연락처	880-2024
			작성자 (작성부서)	이용호

8. 고유목적사업비 비율

지표유형 (계량/비계량)	계량지표	대상기금	개별 기금
개요(정의)	- 기금지출액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의 비율		
정책목적	- 기금운영의 본래 목적을 위한 경비지출 유도		
해석 및 특징	- 고유목적사업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운영이 건전한 것으로 해석		
산정공식	$\frac{\text{고유목적 사업비}}{\text{기금지출액}} \times 100(\%)$ <p>※ 고유목적사업비: : 기금결산보고서의 고유목적사업비 + 용자금 + 정책사업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※ 기금지출액: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지출총액 (재무활동 제외) ※ 조성목표액 미도달로 적립만하고 있는 기금 및 지방채상환기금은 평가 제외 ※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</p>		
목표·기준치 (바람직한 상태)	- 높을수록 바람직		

제출서식	(단위 : 천원)			
	구분	고유목적사업비(A)	기금지출액(B)	지표값(%) (A/B)×100
	사회복지 통합기금	92,200	92,200	100
	※ 금년도 분석대상인 모든 기금에 대하여 작성, 단 고유목적사업비가 없는 경우에는 지표값을 공란으로 처리하고, 평균시에도 모수에서 제외 ※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			
검증자료	※ 현장검증시 확인사항(✓) ▶ 기금결산서: 고유목적사업비 및 용자금 기금지출총액		연락처	880-2024
			작성자 (작성부서)	이용호

9. 경상적 경비비율

지표유형 (계량/비계량)	계량지표	대상기금	개별 기금
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--	-------

개요(정의)	- 기금지출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을 파악하여 운영의 경직성 평가
정책목적	- 기금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지출구조를 유도하고 불필요한 경상 경비 편성으로 인한 예산낭비 소지를 차단
해석 및 특징	- 전체 기금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가 많을수록 존치의 필요성이 낮음
산정공식	$100 - \left(\frac{\text{경상적 경비}}{\text{기금지출액}} \times 100(\%) \right)$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경상적 경비: 기금결산보고서 상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- 다만, 정책사업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제외 ※ 기금지출액: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지출총액 (재무활동 제외) ※ 적립중인 기금 및 지방채상환기금은 평가제외 ※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
목표·기준치 (바람직한 상태)	- 경상적 경비로 지출되는 예산이 적은 상태

제출서식	(단위: 천원)			
	구분	경상적 경비(A)	기금지출액(B)	지표값(%) 100-((A/B)×100)
	사회복지 통합기금	0	92,200	100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금년도 분석대상인 모든 기금에 대하여 작성, 단 고유목적사업비가 없는 경우에는 지표값을 공란으로 처리하고, 평균시에도 모수에서 제외 ※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			
검증자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현장검증시 확인사항(✓) ▶ 기금결산보고서 	연락처	880-2024	
		작성자 (작성부서)	이용호	

10. 채권관리 적정성

지표유형 (계량/비계량)	계량지표	대상기금	개별 기금
개요(정의)	-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		
정책목적	- 융자성 기금의 채권관리 적정성을 유도		
해석 및 특징	- 미수채권을 통해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파악하는 지표로 지표값이 낮을수록 기금운영의 효율성이 높음		
산정공식	$100 - \left(\frac{\text{기한도래 채권중 미수액}}{\text{기금의 기한도래 채권}} \times 100(\%) \right)$ <p>※ 기한도래 채권중 미수액 : 해당연도말 현재액 중 이행기간 도래액 ※ 기금의 기한도래 채권 : 전년도말 현재액 중 이행기간 도래액 + 해당연도 발생액 중 이행기간 도래액 ※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</p>		
목표·기준치 (바람직한 상태)	- 낮을수록 바람직함		

제출서식	(단위 : 천원)			
	구분	기한도래 채권중 미수액(A)	기금의 기한도래 채권(B)	지표값 100-((A/B)×100)
	사회복지 통합기금	해당	없음	
	※ 금년도 분석대상인 모든 기금에 대하여 작성, 단 기한도래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지표값을 공란으로 처리하고, 평균시에도 모수에서 제외 ※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			
검증자료	※ 현장검증시 확인사항(✓) ▶ 채권결산보고서		연락처	880-2024
			작성자 (작성부서)	이용호

11.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

지표유형 (계량/비계량)	계량지표	대상기금	개별 기금
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--	-------

개요(정의)	- 기금별 · 관리위원회 설치 실적
정책목적	- 운용계획 및 지원대상 선정 등 기금관리 투명성 · 전문성 제고
해석 및 특징	- 관련 위원회의 설치 여부로 분석
산정공식	- 4항목으로 평가 ※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※ 통합기금 관련 위원회도 분석대상에 포함됨 ※ 성과에 설치한 다른 위원회에서 분석대상 기금에 대한 위원회 역할을 포괄할 경우에는 증빙자료 확인 후 판단
목표 · 기준치 (바람직한 상태)	- 4항목에 대해 모두 해당

제출서식	<개별기금> 다음 4가지 항목 중 해당 항목이 0개면 80점, 1개면 85점, 2개면 90점, 3개면 95점, 4개면 100점으로 평가함		
	구 분	확인	
	① 위원 중 외부 위원 비율 50% 이상	○	
	② 위원 중 전문가 비율 30%이상	○	
	③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개최	×	
	④ 소집회의시 위원 참석율 70%이상	×	
	점 수	90	
	①의 외부위원에 지방의원 포함, ②의 전문가는 외부 전문가만 해당 ③, ④의 소집회의는 서면심사 제외		
	<종합점수>		
	구분	점수	
	기금명	(a)	
	기금명	(b)	
	(계)	(a+b)/2	
	※ 금년도 분석대상인 모든 기금에 대하여 작성 ※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		
검증자료	※ 현장검증시 확인사항(✓)	연락처	880-2024
	▶ 위원회 구성 관련 보고문서 및 개최 · 결과보고 공문 등	작성자 (작성부서)	이용호

12. 수혜자선정의 투명성

지표유형 (계량/비계량)	계량지표	대상기금	개별 기금
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--	-------

개요(정의)	- 기금 집행의 적정성 판단계로서 수혜자 선정의 합리성을 분석
정책목적	- 기금 집행의 투명성 및 자의적 운용 여부를 분석
해석 및 특징	- 집행부의 자의적 운용 억제 및 기금운용의 내실성 분석
산정공식	- 4항목으로 평가 ※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※ 기존수혜자에 대한 점검: 2008년 기금지출시 이전 수혜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
목표·기준치 (바람직한 상태)	- 4항목에 대해 모두 해당

제출서식	<개별기금> 다음 4가지 항목 중 해당 항목이 0개면 80점, 1개면 85점, 2개면 90점, 3개면 95점, 4개면 100점으로 평가함		
	구분	확인	
	① 조례에 선정기준이 있음	○	
	② 조례내용을 구체화한 규칙 및 훈령 등이 있음	○	
	③ 수혜자를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있음	○	
	④ 기존 수혜자에 대한 점검을 하였음	×	
	점 수	95	
	<종합점수>		
	구분	점수	
	기금명	(a)	
	기금명	(b)	
	(계)	(a+b)/2	
	※ 금년도 분석대상인 모든 기금에 대하여 작성 ※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		
검증자료	※ 현장검증시 확인사항(✓) ▶ 수혜자선정기준이 있는 조례, 규칙, 훈령, 결재서류 등	연락처	880-2024
		작성자 (작성부서)	이용호

2 개별기금 성과분석보고서

‘12년도 사회복지통합기금 성과분석 보고서

I. 기금운용 개요

- 연혁 2006. 6. 22
 - ※ 저소득자녀장학, 기초생활보장, 노인복지, 여성정책, 장애인복지기금 통합
- 기금조성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‘11년도 운용현황		‘11년말 조성액	‘12년 운용계획			‘12년도말 추정액	비 고
			수입	지출	증감		
477	92	8,297	625	95	530	8,827	

II. 분석결과

1. 총 평

- 사회복지통합기금(저소득층자녀장학, 기초생활보장, 노인복지, 여성발전, 장애인복지)을 『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』에 의거 적정하게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음
- 계정별로 살펴보면
 -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계정은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학업의욕을 고취시켜 교육을 통한 자립기반을 조성 빈곤의 세대전승을 차단하는데 기여
 - 기초생활보장 계정은 지역자활센터 및 공동체등에서 추진하는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저소득층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2014년까지 총 25 억원을 조성 사업 시행
 - 노인복지 계정은 사회발전과 더불어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수명이 늘어남으로써(하동군 전체인구의 26.5% 차지) 매년 늘어나는 노인복지수

용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4년까지 35억원 기금 조성 사업 시행

- 여성발전 계정은 하동군의 여성 인구는 26,235명으로 전체인구의 50.8%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성평등의 촉진,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2014년까지 20억 기금조성 사업 시행
- 장애인복지 계정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여건 조성을 위하여 2014년까지 15억원 기금조성 사업 시행

2. 사업운영의 성과

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

(단위 : 백만원, %)

'10년도			'11년도		
최초계획	집행실적	비율	최초계획	집행실적	비율
80	88	110	96	92	95.8

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

- 급증하는 사회복지의 수요에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, 노인·여성·장애인·저소득층 등 어려운 군민의 복지 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
- 추진근거 및 경위
 - 『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』 제26조
- 사업개요

구 분	사업개요	비 고
저소득자녀장학기금	○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: 23명, 12백만원 - 중 학 생 : 10명, 4백만원 - 고등학생 : 12명, 7백만원 - 대 학 생 : 1명, 1백만원	
노인복지기금	○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경로당 활성화 교육 : 50백만원 - 어린이 안전지킴이 봉사대 운영 : 15백만원	

구 분	사업개요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로당 종이접기 사업 : 10백만원 - 경로당 활성화 순회교육 : 15백만원 - 노인회지회 활성화 사업 : 10백만원 	
여성발전기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지원 : 9개사업, 30백만원 - 여성리더 양성사업등 : 6백만원 - 병·켄 뚜껑 모우기 운동 : 3백만원 - 다문화여성 일자리 창출사업등 : 6백만원 - 찾아가는 에너지 절약 사업 : 3백만원 - 녹색성장관련 사업등 : 5백만원 - 결손가정 청소년 문화체험 : 3백만원 - 다문화가정 중창단 운영 : 4백만원 	

-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

구 분	사업계획	사업실적	달성도
'10년	<p>[저소득자녀장학기금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30명, 13백만원(중·고·대학생) 	<p>[저소득자녀장학기금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36명, 18백만원 	138%
	<p>[노인복지기금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어린이 안전지킴이 봉사대 : 20백만원 ○ 경로당 종이접기 사업 : 10백만원 ○ 경로당 활성화 순회교육 : 20백만원 	<p>[노인복지기금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어린이 안전지킴이 봉사대 : 20백만원 ○ 경로당 종이접기 사업 : 10백만원 ○ 경로당 활성화 순회교육 : 20백만원 	100%
	<p>[여성발전기금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여성리더양성사업 : 7백만원 ○ 녹색성장관련 사업등 : 10백만원 	<p>[여성발전기금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여성리더양성사업 : 7백만원 ○ 녹색성장관련 사업등 : 13백만원 	117%

구 분	사업계획	사업실적	달성도
	[저소득자녀장학기금] ○ 30명, 16백만원(중·고·대학생)	[저소득자녀장학기금] ○ 23명, 12백만원	75%
	[노인복지기금] ○ 어린이 안전지킴이 봉사대 : 15백만원 ○ 경로당 종이접기 사업 : 10백만원 ○ 경로당 활성화 순회교육 : 15백만원 ○ 노인회지회 활성화 사업 : 10백만원	[노인복지기금] ○ 어린이 안전지킴이 봉사대 : 15백만원 ○ 경로당 종이접기 사업 : 10백만원 ○ 경로당 활성화 순회교육 : 15백만원 ○ 노인회지회 활성화 사업 : 10백만원	100%
'11년	[여성발전기금] ○ 여성리더 양성사업등 : 6백만원 ○ 병·캐 뚜껑 모우기 운동 : 3백만원 ○ 다문화여성 일자리 창출사업등 : 6백만원 ○ 찾아가는 에너지 절약 사업 : 3백만원 ○ 녹색성장관련 사업등 : 5백만원 ○ 결손가정 청소년 문화체험 : 3백만원 ○ 다문화가정 중창단 운영 : 4백만원	[여성발전기금] ○ 여성리더 양성사업등 : 6백만원 ○ 병·캐 뚜껑 모우기 운동 : 3백만원 ○ 다문화여성 일자리 창출사업등 : 6백만원 ○ 찾아가는 에너지 절약 사업 : 3백만원 ○ 녹색성장관련 사업등 : 5백만원 ○ 결손가정 청소년 문화체험 : 3백만원 ○ 다문화가정 중창단 운영 : 4백만원	100%

3.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

○ 기금의 설치목적(표 2-1)

(표 2-1)

설치근거	설치목적	주요사업 내용	비 고
<p>하동군사회복지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저소득가정의 생활 안정 도모 ○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금 대여 ○ 장애인의 인권보호, 사회참여 조성 ○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복지증진 ○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 등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장학금 지급 ○ 수급자 및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융자 ○ 자활지원사업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 ○ 재가장애인의 재활지원 사업 ○ 장애발생 예방 및 재활을 위한 사업 ○ 장애인관련단체 및 장애인복지 시설 입소자 보호사업 ○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조사·연구 홍보활동사업 ○ 충효예정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○ 하동군 노인회보 발간 ○ 노인교육 및 노인대학, 노인회 운영지원 ○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○ 사회봉사활동 참여지도 ○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지원 사업 ○ 여성단체 활동지원 사업 ○ 여성폭력예방 등 인권보호 활동 사업 ○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조사·연구 홍보 활동사업 	

○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

- 저소득층자녀장학계정은 저소득층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설치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고,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은 적립과 함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은 목표액 기금조성후 설치목적에 따라 운용

○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·외부기관의 감사,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(표 2-2)

(표 2-2)

구 분		지 적 내 용	비 고
각종감사 지적사항	'09	해당없음	
	'10	해당없음	
	'11	해당없음	
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		해당없음	
기 타		해당없음	

○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

- 기금조성 목표 달성 후 사업 시행 할 계획이었으나, 목표 달성 전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후 시행할 계획

○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(예: 신속적 집행, 적립성, 안정성 등)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(표 2-3)

(표 2-3)

사업명	'11년 사업비	이유	불가피성 정도
① 저소득층자녀장학금사업	12백만원	신축적 집행	상
② 기초생활보장사업	-	적립성	중
③ 노인복지사업	50백만원	신축적 집행	상
④ 여성발전사업	30백만원	신축적 집행	상
⑤ 장애인복지사업	-	적립성	중
합계			

4. 사업의 중복성·유사성

- 일반회계, 특별회계, 타 기금과의 중복·유사 사업현황<표 3-1>

<표 3-1>

구분	사업명	금액	비고
기금			
일반·특별회계 예산사업		해당 사항 없음	
타 기금			

-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, 특별회계, 타 기금과의 중복성·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: 해당없음

5. 재원조성의 적정성

- 재원의 성격 : 출연금 및 이자수입
- 재원의 규모 : 8,297백만원(2011년말 기준)
-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에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(표 4-1)

(표 4-1)

구 분		'09		'10		'11		비고
수 입	합 계	7,206	%	8,000	%	8,389	%	
	출연금	400	5.6	400	5	300	3.6	
	보조금							
	차입금							
	융자금회수 (이자포함)							
	예탁금상환금							
	예치금회수	6,562	91.1	7,123	89	7,912	94.3	
	예수금							
	이자수입	243	3.3	477	6	177	2.1	
	기타수입	1	0.0					
지 출	합 계	7,206	%	8,000	%	8,389	%	
	고유목적사업비	83	1.2	88	1.1	92	1.1	
	융자금							
	인건비							
	물건비							
	예탁금							
	예치금	7,123	98.8	7,912	98.9	8,297	98.9	
	차입금원리금상환							
	예수금원리금상환							
	기타지출							

※ 비율(%)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(예- 출연금/합계)

6.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

-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은 현재 순수 지방비(군비 100%)로 조성하고 있으나, 현실적으로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
- 국고보조금을 50% 보조하여 기금조성의 활성화는 물론 기금조성목적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건의